

#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이종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6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  
발 의 자: 이종배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김경훈, 김길영, 김영철,  
김재진, 김춘곤, 김혜영,  
박상혁, 박춘선, 송경택,  
신동원, 옥재은, 이병운,  
이상욱, 최민규, 최윤희  
의원(15명)

### 1. 제안이유

- 현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정산과정이 번거롭고,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다자녀 가족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발생해 왔음.
- 이에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에 바로녹색결제시스템 각 호의 자격이 확인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으로써 실물 카드 미소지로 인해 주차요금을 감면받지 못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주차요금 감면 가능한 경우에 바로녹색결제시스템 각 호의 자격이 확인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(안 제7조제1항).

### 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 중 “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”을 “주차시간측정계기 또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각 호의 자격이 확인이 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, <u>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</u>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.</p> <p>1. ~ 14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---- ----- ----- -----, ---- - <u>주차시간측정계기 또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각 호의 자격이 확인이 되는</u> ----- -.</p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정산과정이 번거롭고,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다자녀 가족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발생해,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에 바로녹색결제시스템 각 호의 자격이 확인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으로써 실물 카드 미소지로 인해 주차요금을 감면받지 못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이정수

추   계   분   석   관     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